

의안번호	제 26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8월 2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

제출연월일 : 2018년 8월 2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개대상(안 제2조) : 예산 절감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등
- 신고센터의 설치 등(안 제4조) :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 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
- 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안 제6조) : 예산절감, 수입증대 등과 관련된 제안자에게 성과금 지급 및 포상
-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안 제7조~12조) : 감시단 구성 및 임기, 위촉 해제, 권리와 의무, 수당 규정 등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

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 3. 예산낭비 등에 관한 제안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은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도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감시단의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 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할 때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지방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행정안전부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지방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지방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지방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및 예산성과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목적과 기능)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충청북도 포상 조례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국, 원, 실장, 시장, 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4호에 의거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분과위원회별 주관 실·국장이 추천하는 관계분야 전문가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5. 기타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 감시단을 구성·운영 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감시단 운영에 따른 제비용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3. 관련조문

- 안 제11조 (감시단의 수당 등)
 - 감시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감시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나. 추계의 전제 : 감시단 회의(연2회 개최), 현장검증(4회)

- 참석수당 : 60명 × 2회 × 100,000원 = 12,000,000
- 현지심사수당 : 5명 × 4회 × 100,000원 = 2,000,000
- 원거리참석여비 : 10명 × 2회 × 50,000원 = 1,000,000

다. 추계 결과 :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세출 75백만원 정도 소요

라. 자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세 출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운영비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6. 작성자 : 충청북도 예산담당관 신성영